

수입자유화에 따른 식물검역의 과제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외국여행시 가져올 때에는
다시한번 식물검역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조 남 길

국립식물검역소 검역과장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자주
들려오는—수입자유화, 개방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되고 있다.

실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금년내에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농업이 크
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막

연하게나마 국민 모두가 걱정하
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
본, EC도 농산물분야에 대해서
는 그동안 정부가 적극 보호해
왔으나 이제는 농산품 까지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변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
계의 현주소이다.

시장과 백화점을 둘러보면 그
동안 보지도 못했던 과실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고 있다. 자몽과 키위, 코코넛 등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았던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내년에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도 수입자유화 대상이다.

이러한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물량은 매년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며 종류도 다양해져서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과실과 농산물을 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국제간의 이동에 따라 병해충도 함께 물어 들어와 국내에 전파될 위험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동남방에 위치한 반도로서 기후적으로도 온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병해충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기후와 먹이의 조건이 좋은 관계로 쉽게 정착하여 농림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병해충을 수입시점에서 막기 위하여 항구 또는 공항에서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식물검역을 크게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입식물 양적증대, 품목다양화

우리나라는 1989년 10월에 GATT 제18조 BDP를 졸업하게 됨에 따라서 다가오는 1997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개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을 제시하여(표 1) 사전 시행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볼때 농산물의 수입국에 해당하는 국가로서 곡물과 사료류등 국내 수요량에 비하여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농산물은 부득이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새로운 수요창출로 인해서도 농림산물인 청과, 곡류, 열매와 중국과의 교역에 따른 한약재 등의 수입이 그림 1에서와 같이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와함께 무역대상국도 늘어나 지금 현재 113개국으로서 세계 전지역이 교역국으로 되어 가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실류와 경합될 수 있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호두가

개방될 예정으로 있어 수입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해충유입 위험성도 커져

수입농산물이 그림 1에서와

같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검사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병해충의 종류와 발견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검사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표 1. 수입자유화 품목중 식물검역대상

	과 일	곡 물	사 료	기 타
합계 : 54품목	20(15)	19	7	8
'89 계 : 21품목 (10)	(대추야자), (망고), (과아바), (나무딸기), (커런트)와 (구즈베리), (슬로우), (파파야), (초본류 딸기)(신선), (피스타치오)	잠두, 이집트콩, 렌즈콩	들깨박, 기타식물성박, 배합사료(양돈용), 기타배합사료(대용유 제외)	복숭아, 자두 및 살구의 핵, 잇꽃씨, 시이넛
'90 계 : 13품목 (2)	(페칸), 신선한 과일(키위프르트)	호밀가루, 밀(듀럼종), 밀(메슬린), 밀(기타), 호밀, 귀리, 옥수수	알팔파, 배합사료 (어류용)	저피, 해바라기씨
'91 계 : 20품목 (3)	(멜론), (호두)(탈각한 것), (호두)(탈각 안한것), 파인애플, 바나나, 해줄넛 또는 필버트(탈각 안한 것), 해줄넛 또는 필버트(탈각한 것)	곡물의 배아, 채두분, 조, 수수, 강남콩, 완두콩, 기타콩, 기타 건조 채두류, 대두분	대두박	떡갈잎, 멧게잎, 유채

주: ()는 수입금지품임.

표 2.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중 식물검역 및 수입금지대상품목 현황('89~'91)

구분	예시품목수	식물검역 대상 품목수			
		수입금지품	비수입금지품	계	
과	실	20	15	5	20
축	산	24		-	-
가	공	106		-	-
수	산	53		-	-
곡	물	19		19	19
사	료	10		7	7
기	타	11		8	8
계		243	15	39	54

※수입금지품목 : 망고, 파파야, 멜론, 나무딸기 등 15개 품목

신발견 병해충의 수적 증가와 국내 분포종이라도 상이한 생태형 및 이종의 유입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식물검역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거나 소홀했던 틈을 타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된 병해충중 중요한 것으로는 솔잎혹파리(1930년경), 흰불나방(1958년경), 밤나무순혹벌레(1960년경), 감자나방(1968년경), 온실가루이(1977년경), 벼물바구미(1988년경), 감자더듬이병(1910년경), 사과근두암중병(1920년경), 벼흰잎마름병(1920년경)이 있다.

이렇게 유입된 병해충의 피해는 모든 국민이 이미 실감하였

우리라 생각된다. 솔잎혹파리는 우리나라의 대표수종인 소나무를 말라죽게 했으며 흰불나방은 활엽수에, 밤나무순혹벌은 우리나라 재래종 밤나무를 전멸시키는 등 산림자원이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뿐 아니라 방제에 투입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병해충의 유입경로에 대하여는 정확히 조사된 문헌보고는 없지만 수입농산물이나 수입물품의 포장재에 부착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입물량은 더한층 크게 늘어날 것이며 새로운 병해충의 부착유입 위험성도 그만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식물보호협약

국제식물보호협약의 목적은 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의 병해충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이들 병해충의 방제조치를 장려하는데 있다. 이 협약은 1951년 FAO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52년에 발효되고 우리나라는 1953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92개국 정부가 이 협약의 조인국이거나 가입국이다.

국제식물보호협약 제4조에는 국립식물보호기관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계약국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여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검사, 화물의 소독처리, 위생증명서의 발급, 병해충 및 그 방제에 관한 정보의 배포와 식물보호분야의 연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UOI이 식물검역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GATT에서도 인간, 동·식물에 대하여는 GATT 제 20조 b항에 의하여 병해충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80년대부터 각국에서는 보호무역 경향 심화에 편승하여 일반적 예외규정으로 인정되었던 검역규제를 자의적으로 해석 시행하여 수입금지, 수입제한 등의 간접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국식물의 보호에 필요한 검역만을 실시하되 국제식물보호협약기구에서 개발된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운영함으로써 무역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하자는 안이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한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다.

수입금지대상식물 개방요구중대

농림산물의 수입형태는 선박, 항공기를 이용한 화물과 여객 및 승무원의 휴대품 및 국제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산물의 수입이 자유화 되었다고 해서 식물방역법에 의해서도 수입자유화가 된것은 아니다. 수입자들의 대부분이 수입자유화가 되면 식물검역도 자유화가 되어 식물방

역법 제7조에 의한 수입금지품이 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89년~91년 까지의 수입자유화에서 실패품수중 수입금지 대상식물의 수는 표 2와 같다.

식물방역법 제7조에 의한 수입금지 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농림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병해충이 분포된 국가로부터는 그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소독방법의 발달에 따라 수입금지지역 및 대상 식물에 대해서도 훈증소독처리, 저온처리, 증열처리 등을 통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수입금지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수입식물검역의 과학화

수입농산물의 검사에 대하여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을 통하여 식물검역이 무역의 간접규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의

식물검역은 무조건 수입금지라든가 병해충의 유입방지대책만을 얘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

세계 각국은 수입검역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명료한 검역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의 각종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수집된 병해충 자료의 조사는 그 결과가 수입에 대한 규제와 직결되어 국민경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분석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법정경계병해충 이외에도 외국에서 농림산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국내에 유입되면 농림산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하며 검사도 크게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각 항구 또는 항만에는 소독시설을 하여 병해충의 신속한 소독으로 병해충의 유입을 막아야 할 것이며 수입된 후 도착항에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상대국에서 검사 또는 소독을 완벽하게 실시하여 수입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민 협조 절실한 때

산업사회의 고도성장과 무역 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림산물의 수입개방화 요구가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농림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검역의 기반시설도 부족한 형편에 이의 대책수립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세계가 급속도로 개방화되고 있고 우리의 수출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세계 12대 교역국이된 시점에서 농림산물도 무역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년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농림산물의 국제교역량이 크게 증가되고 수입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수입대상국 또한 크게 다변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수입농산물에 부착한 외국 병해충의 국내 침입 위험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한톨의 종자, 한개의 과실에 외국병해충이 묻어 들어와 국내에 정착하게 된다면 이의 방제를 위하여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방제비가 투입된다 하여도 완전히 박멸시킬 수는 없게 된다.

농림산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자원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수입이 자유화 되었다고 하여 외국의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가져와서 국내에 새로운 병해충을 전파시키는 전파매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외국여행시 농산물을 가져올 때에는 다시한번 식물검역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